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9년 10월 25일

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[사모투자재간접형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최소 투자금액 삭제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종류A1 수익증권, 종류A-e 수익증권, 종류A-g 수익증권, 종류C1 수익증권, 종류C-e 수익증권, 종류C-g 수익증권, 종류C-i 수익증권, 종류C-s 수익증권, 종류C-w 수익증권, 종류S 수익증권, 종류C-p 수익증권, 종류C-pe 수익증권 투자자격 공통부분 : 500만원 이상 투자하는 (이하 생략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종류A1 수익증권, 종류A-e 수익증권, 종류A-g 수익증권, 종류C1 수익증권, 종류C-e 수익증권, 종류C-g 수익증권, 종류C-i 수익증권, 종류C-s 수익증권, 종류C-w 수익증권, 종류S 수익증권, 종류C-p 수익증권, 종류C-pe 수익증권 삭제(이하 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 제한)	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, 가입자격은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한다. 다만, 최초 투자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선취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.	삭제
제3조의3 (투자신탁의 가입 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)	제3조의3 (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) ①이 투자신탁은 최초 가입 시 계좌별로 500만원 이상(선취판매수수료 포함)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. 다만,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②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(평가금액)를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. 다만, 평가손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.	삭제
제24조 (환매업무)	제24조 (환매업무)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의 잔고(평가금액)가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,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하다.	제24조 (환매업무)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최소 투자금액 삭제

항목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14.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만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즉, 신탁계약서 3조의3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청구 후 잔고(평가금액)가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,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합니다.	삭제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마. 특수형태 -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[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(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며,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]	마. 특수형태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[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(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]

<p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, 11. 매입 및 환매 및 전환기준 가. 매입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(1), (2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A1 수익증권, 종류A-e 수익증권, 종류A-g 수익증권, 종류C1 수익증권, 종류C-e 수익증권, 종류C-g 수익증권, 종류C-i 수익증권, 종류C-s 수익증권, 종류C-w 수익증권, 종류S 수익증권, 종류C-p 수익증권, 종류C-pe 수익증권 투자자격 공통부분 : 500만원 이상 투자하는 (이하 생략)</p> <p>※ 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 ① 이 투자신탁은 최초 가입 시 계좌별로 500만원 이상(선취판매수수료 포함)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. ②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(평가금액)를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 다만, 평가손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(1), (2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A1 수익증권, 종류A-e 수익증권, 종류A-g 수익증권, 종류C1 수익증권, 종류C-e 수익증권, 종류C-g 수익증권, 종류C-i 수익증권, 종류C-s 수익증권, 종류C-w 수익증권, 종류S 수익증권, 종류C-p 수익증권, 종류C-pe 수익증권 삭제(이하 현행과 같음)</p> <p>삭제</p>
<p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1. 매입 및 환매 및 전환기준 나. 환매</p>	<p>(5)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탁계약서 제3조의3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청구 후 잔고(평가금액)가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,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합니다.</p>	<p>(5)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최소 투자금액 삭제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[요약정보]</p>	<p>※ 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 ① 이 투자신탁은 최초가입 시 계좌별로 500만원 이상(선취판매수수료 포함)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. ②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(평가금액)를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 다만, 평가손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삭제</p>